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 계약 법률 인식에 관한 연구

박재호, 천희숙*[¶]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외식조리관리전공 박사과정*

Franchisee's Cognition on Franchise-contract in Foodservice Industry

Jae-ho Park, Hee-sook Cheon*[¶]

Professor, Dept. of Foodservice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The Doctor's Course Student, Dept. of Foodservice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unequal trades 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legal relation control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in foodservic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preparatory process for basic data to establish a statute law for the franchisee in foodservice industry. We made up a questionnaire for 53 franchisees in March 2004 and analysed spss 10.0. This result was as follows. First, the special office was needed for publicity activities of law related franchise and the investigation of a right in the written contract for a franchisee. Second, there should be the conformation and objective criteria of monopolistic goodwill in legal proceedings. Third, the larger the scale of franchisees was, the less efficiently the conflict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were controlled.

Key words : franchisor, franchisee, legal relation, franchisee's cognition, franchise-contract.

I. 서론

100여년 전 미국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e system)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활성화되었으며, 국내 외식업계에도 다양한 형태와 업종에 도입되어 경험 없는 외식업 창업 희망자와 부업을 하고자 하는 Two-jobs 족에게 새로운 판매 제도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질이 빈약한 국내 소규모 브랜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남진선,

¶ : 교신저자, 018-322-8919, chs0527@hotmail.com,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002). 이에 한국 프랜차이즈협회에서는 1999년 2월 프랜차이즈 사업의 자정 활동을 위한 윤리 강령이 선포되었으나, 여전히 가맹 본부의 낮은 시장 진입 장벽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본부와 가맹점의 생존률을 연구에서 잘 설명되고 있고 이를 중재할 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과 법규 개정은 현실적으로 미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박재호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시 계약서에 기재된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평등 조항을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맹점 특성에 따른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법률 관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법률의 정비와 개정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연구

1.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가맹 계약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산업 또는 사업을 하는 양 당사자간의 법률적 권리 의무 관계를 일컬으며,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 본부와 그 가맹점 사업자간의 장단점은 <표 1>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표 1>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장단점

구분	가맹 본부	가맹점 사업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점 비용이 없다 · 단시일 내 다점포에 따른 수익 증가 · 재고 부담이 없다. · 단시간 내 지명도가 높아진다. · 가맹금과 로열티 확보로 안정된 사업 수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경험 사업 가능 · 투자 리스크의 최소화 · 지속적 연구 개발과 지원 받음 · 인재를 끌어들이기가 용이 · 적은 자본으로 사업 가능 · 본부의 인지도와 노하우 활용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금법 관련 소송이 다사 · 한 가맹점의 과실이 전체 가맹점에 영향을 줌 · 매뉴얼 준수 규약 무시 · 가맹점의 집단 탈퇴와 압력 단체화 · 가맹점 탈퇴 후 독립 영업 · 부실 채권 발생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위주의 일방적 계약 · 계약 중도 탈퇴 곤란 · 로열티나 지도료의 과잉 지불 · 프랜차이즈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많다 · 본부에 대한 능력 의존도가 높다 · 물품의 고가 구매 강요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철학과 목적의 명확화 · 확실한 경영 이념과 목표 설정으로 경영 윤리관 확립 · 본사의 기능과 역할 증대 · 가맹점에 대한 소속감, 동질성, 공감대, 신뢰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자로서의 계약 이행 · 자립적 경영 자세 확립 · 본사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통한 고객에 대한 인지도 제고

자료: 한국 산업훈련연구소, 외식 비즈니스, 1992, p.47.

국가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법률적 정의에 의하면,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일정한 형태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공법상 프랜차이즈란 통상 국가 주권에 속하는 권리를 사인(私人)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일정한 특권이나 특허를 의미하나 상법상으로는 타인의 상표 등을 사용하여 그의 지도와 통제 하에 특정한 사업을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법무부 1989)하고 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호·상표·서비스 방식·영업 방식의 사용권·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가맹 본부의 지도, 조인 및 통제·가맹점의 점포·영업자본 제공·로얄티 등 사용료의 지급·당사자 법적 지위의 상호 독립성이라고 정의(경실련 1995)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 사업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 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상무성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마케팅 체제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또는 분배하는 권리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에서는 프랜차이즈 제도란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들 간의 계약 관계로서, 가맹 본부는 노하우와 훈련 등의 분야에서 가맹점주의 사업에 계속적인 관심을 제공하거나 유지하여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본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동된 상호, 형식 및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사업에 자기 자신의 재원으로 자본 투자를 하는 것(Mendelsohn 1985)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Uniform Franchise and Business Opportunities Act은 (1)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그리고 구술·서면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계약 (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본부가 실질적으로 정하는 마케팅 계획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판매·배급 등의 영업에 종사할 권리가 부여되고, (나) 위 마케팅에 의거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은 가맹 본부나 그의 子會社가 보유하는 상표·서비스표·상호·광고·기타 영업 표식과 실질적으로 연합되며, (다)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또는 지급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2) 지역분할 프랜차이즈 계약(한국법제연구원 1994)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독일의 Der Deutsche Franchiseverband e.V에서는 법적으로 독립한 기업간에 계속적인 채권 계약 관계의 기초 위에서 협동적으로 조직된 판매 제도이며, 이 제도는

단일체로서 시장에 등장하고, 관계 당사자사 간의 분업적 이행 계획과 당사자 전체의 일치된 행동에 대한 지시 및 통제 제도를 그 특징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상호·상표·서비스표·기타 영업의 상징인 표식 및 경영 노하우를 사용하여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의 판매 및 기타 사업을 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반면에 가맹점 사업자는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하하여 가맹 본부의 지도 및 기타 사업을 행하는 양자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

프랜차이즈 계약은 다양한 업종의 유통 과정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그 법적인 성질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인 성질을 규정한 독일의 대표적인 학설로는 라이선스 학설, 권리의익 임대차설, 업무처리 계약설, 혼합계약설, Martinek의 견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학설에 대한 견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구성요소에 따라 혼합 계약이나 복합 계약으로 보고 있다. 즉 프랜차이즈 계약은 위임·매매·도급·임대차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혼합 계약으로 보는 견해(정동주 1991)와 영업 표지의 사용 계약과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계약 그리고 영업을 지도·통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여러 가지 계약이 복합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복합 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최영홍 1990)가 있다. 그리고 노하우 계약·라이선스 계약 등의 혼합 계약이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은 그것 자체로서 법적 일체성을 가진 독자적인 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김형배 1997)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혼합 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여러 전형·비전형 계약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유상·쌍무성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계속적 채권 계약’으로 정리할 수 있다(구재균 1999).

3. 선행 연구

허경화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프랜차이즈 당사자들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이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정착화를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과 가맹점 사업자의 차원에서 연구하였다(허경화 1993).

천승태는 가맹상 계약(加盟商契約)이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에 의한 해석론이 태부족하며, 이들 모두 가맹상 계약과 관련되는 현행 명령으로 도·소매업 진흥법 및

동 시행령 등이 있으나 이들 모두 가맹상 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상 계약의 남용 방지와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정된 통제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가맹 사업의 등록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가맹상 계약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독자적인 가맹상 계약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천승태 1996).

양재현은 프랜차이즈 계약 당사자간의 법률 관계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프랜차이즈 계약의 대외적 법률 관계에서 계약 책임과 관련하여 명의 대여자 책임과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불법 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사용자 책임과 제조물 책임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개 제도 또는 등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목시의 갱신을 인정하는 규정 또는 부당한 프랜차이즈 갱신 거절을 금지하는 강행 법규의 신설을 제안하였다(양재현 2000).

유경숙은 프랜차이즈 영업에 대해서 상법이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동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민법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법과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이 존재하고 가맹 본부가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상법상의 대리이론과 명의 대여자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차례로 검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 프랜차이즈 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밝혔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의 대내적 법률 관계와 가맹 본부와 제3자와의 대외적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불평등한 당사자인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와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이다(유경숙 2001).

이용택은 현행 프랜차이즈 관련법의 미비한 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교 법적 연구를 통한 법제의 마련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이용택 2002).

Ghosh A와 Crang CS은 새로운 가맹점 설치에 대한 상권 선정의 설정은 가맹점을 상권적인 관점에서 설치 구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성과와 가맹점을 구성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존 가맹점이 입을 수 있는 손실과 유사 업종간의 경쟁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Ghosh A and Crang CS 1990).

III. 조사 설계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시 계약서에 기재된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평등 조항을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맹점 특성에 따른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법률 관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가맹점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개정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가맹 사업 관련 법률에 관한 문헌 고찰(Lusch & Moon, Anand, Smith)과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가맹점 사업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선별한 후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대상은 국내에서 창업한지 5년 이상된 패스트푸드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한식 전문점, 치킨 전문점, 주점 전문점 등 외식업 5개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기입법에 의해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바로 수거하였다.

설문 기간은 2004년 5월 한 달간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10.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차이 분석을 실시하여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계약서상의 불공정 조항과 거래 사항,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법률관계 규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 중에서 한국의 자생 브랜드 5개 업체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이유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시스템의 특성이 거의 유사하며, 선정된 5개 가맹점 사업체는 각각의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설문지의 구성

〈표 2〉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관련 법률에 대한 설문지의 구성이며, 인구통계학적인 3문항, 가맹점 유형에 대한 10문항, 가맹 사업 관련 법률인지에 대한 3문항, 계약서 내의 2문항, 부당 행위에 관한 4문항, 부당 행위에 대한 행동에 관한 2문항, 독점적 영업권에 대한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IV. 분석 결과

1.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3〉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국내 5개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의 성별은 ‘남’ 81.1%, ‘여’ 18.9%로 남자가 더 많았으며, 가맹점주의 연령은 ‘30대’가 48.9%, ‘40대’가 28.4%, ‘50대’가 20.8%로 30대가 많았으며, 가맹점주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졸’ 47.2%, ‘전문대졸’ 26.4%, ‘고졸’ 22.6%로 대학교졸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주로 대학교 졸업의 30대 남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점 유형

〈표 4〉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개점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항 목	설문 내용	문항 수	척도
인구통계학 내용	성별, 나이, 최종 학력	3문항	명목척도
가맹점 개점 유형	업종,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개점 총비용, 점포 실평수, 직원수, 월매출액, 본사의 지원유형, 투자비율, 자기 자본의 비율	10문항	명목척도
가맹사업 관련 법률의 인지	신규 계약 체결 시 가맹 계약서의 사전 교부 여부 가맹점 계약과 관련된 법률의 인식 상권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사전 인지	3문항	명목척도
계약서 내의 조항	계약 갱신의 여부, 일정한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 인정 여부	2문항	명목척도
부당 행위 관련	재계약시 가맹 본부로부터 과도한 채투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한 경험 가맹 본부가 가맹점의 계약 만기 후 계약 연장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가맹점 계약 체결시 영업권 내에 동일 가맹점 개설을 승낙하는 각서를 쓴 경험 영업권 내에서 동일 가맹점의 개설을 일방적으로 당해 본 경험	4문항	명목척도
부당행위에 대한 행동	가맹 본부에게 권리주장이나 불이익을 항변한 경험 법률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구조 요청 여부	2문항	명목척도
독점적 영업권의 만족	현재의 독점적 영업권에 대해 만족 여부	1문항	명목척도

〈표 3〉 가맹점 사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43	81.1
	여	10	18.9
연령	20대	1	1.9
	30대	28	48.9
	40대	13	28.4
	50대	11	20.8
	합계	53	100.0
최종학력별	고졸	12	22.6
	전문대졸	14	26.4
	대학교졸	25	47.2
	대학원졸 이상	2	3.8
합계	53	100.0	

〈표 4〉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점 유형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업종	패스트푸드	13	24.5	직원수 (아르 바이트 포함)	2명 이하	11	20.8	
	한식	10	18.9		3~5명	19	35.8	
	치킨	10	18.9		6~10명	8	15.1	
	아이스크림	10	18.9		11~20명	11	20.8	
	주점	10	18.9		21명 이상	4	7.5	
가맹점 운영 기간	1년 미만	4	7.5	월매출액 (만원)	2,000 미만	16	30.1	
	1~2년	12	22.6		2,000~4,000 미만	24	45.3	
	3~4년	15	28.3		4,000 이상	13	24.5	
	5~6년	8	15.1	본사의 설비 유형	설비와 자금	1	1.9	
	7년 이상	14	26.4		설비	5	9.4	
가맹점 개점 총비용	1~2천만원	2	3.8	지원 유형	자금	3	5.7	
	2~4천만원	4	7.5		지원 받지 않음	42	79.2	
	4~6천만원	11	20.8	투자 비율 (본사: 가맹점)	기타	2	3.8	
	6천~1억	8	15.1		0 : 100	45	84.9	
	1~2억	14	26.4		30 : 70	4	7.5	
2~4억	8	15.1	기타	50 : 50	1	1.9		
4억 이상	6	11.3		기타	3	5.7		
점포 실평수	10평 미만	5	9.4	순수 자기 자본과 빌린 자본 비율	10 : 90	5	9.4	
	10~20평	23	43.4		20 : 80	3	5.7	
	20~30평	5	9.4		40 : 60	5	9.4	
	30~50평	6	11.3		50 : 50	3	5.7	
	50~70평	10	18.9		60 : 40	5	9.4	
70평 이상	4	7.5	70 : 30	10	18.9			
점포 좌석수	20석 미만	27	50.9	합계	80 : 20	2	3.8	
	20~40석	10	18.9		90 : 10	7	13.2	
	40~60석	6	11.3		100 : 0	13	24.5	
	60~80석	2	3.8					
	80~100석	5	9.4					
100석 이상	3	5.7						
						합계	53	100.0

업종으로는 ‘패스트푸드 가맹점’ 24.5%, ‘한식 가맹점’, ‘치킨 전문 가맹점’, ‘아이스크림 전문 가맹점’, ‘주점 전문 가맹점’이 각각 18.9%로, 업종별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가맹점 운영 기간은 ‘3~4년’ 28.3%, ‘7년 이상’ 26.4%, ‘1~2년’ 22.6%, ‘5~6년’ 15.1% 로, 가맹점 운영 기간은 대체로 3~4년과 7년 이상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에 따라서는 ‘2,000~4,000만원’ 45.3%, ‘1,000~2,000만

원' 24.5%, '4,000~6,000만원'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대체로 2,000~4,0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가맹점 최초 개점 시 든 총비용에 따라서는 '1~2억' 26.4%, '4~6천만원' 20.8%, '6천~1억' 및 '2~4억'이 각각 15.1%, '4억 이상'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맹점 최초 개점 시 든 총비용은 대체로 1~2억임을 알 수 있다.

점포 실평수에 따라서는 '10~20평' 43.4%, '50~70평' 18.9%, '30~50평'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점포 실평수는 대체로 10~20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점포 좌석수에 따라서는 '20석 미만' 50.9%, '20~40석' 18.9%, '40~60석'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점포 좌석수는 대체로 20석 미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점포의 직원수에 따라서는 '5명 이하' 35.8%, '2명 이하' 및 '10~20명'이 각각 20.8%, '5~10명'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점포의 직원수는 대체로 5명 이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각 점포별 월매출액은 2,000~4,000만원이 45.3%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미만은 30.1%, 4,000만원 이상은 24.5%였다.

본사로부터의 설비와 자금 지원에 따라서는 '전혀 지원 받은 적이 없다' 79.2%, '설비만 받았다' 9.4%, '자금만 지원받았다' 5.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본사로부터의 설비와 자금 지원은 대체로 전혀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사와의 직접 투자 비율에 따라서는 '100% 가맹점주가 직접 투자' 84.9%, '70% 가맹점주가 직접 투자' 7.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본사와의 직접 투자 비율에 대해서 대체로 100% 가맹점주가 직접 투자하였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수 자기 자본과 빌린 자본의 비율에 따라서는 '100:0' 24.5%, '70:30' 18.9%, '90:10'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투자한 금액 중 순수 자기 자본이 빌린 자본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3. 가맹계약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표 5〉는 가맹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는 가맹 계약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가맹 사업자의 경우 계약상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의 도움을 받아 가맹 본부의 불공정 사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이므로 이를 잘 알고 있는가는 가맹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의 22.6%로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며, 알고 있는 사업자의 과반수만이 가맹 본부에게 권리 주장이나 불이익에 대해 항변한 것으로 보아, 가맹 관련 법률의 홍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규 계약 체결 시 가맹 계약서를 사전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사전에 교

〈표 5〉 가맹점 계약과 관련된 법률에 관한 사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가맹 계약과 관련된 법률	알고 있었다.	권리주장이나 불이익에 대한 항변 했다.	6	11.3
		항변하지 않음.	6	11.3
		모르고 있었다.	41	77.4
가맹 계약서 사전 교부	신규 계약시	사전에 교부 받았다.	27	50.9
		사전에 교부 받지 않았다.	26	49.1
계약 갱신 경험	계약 갱신 경험 있다.	재계약시 가맹 본부로부터 과도한 재투자 등의 불이익을 감수했다.	9	16.9
		재계약시 가맹 본부로부터 과도한 재투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았다.	18	33.9
	계약 갱신 경험 없다.	-	26	49.1

부 받은 가맹 사업자는 50.9%, 사전에 교부받지 않은 경우는 49.1%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맹점 계약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계약서를 미리 받아 계약 사항에 대한 검토 후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로 3년 이상의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해 볼 때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계약 과정이며, 이 과정의 묵시적 생략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법률적 권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맹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9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의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 갱신이 있는 사업자 중 16.9%는 과도한 재투자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재계약을 갱신한 사업자가 있었고 조건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는 33.9%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맹 계약 3년을 고려해서 가맹점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사업 30.1%를 제외하면 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은 가맹점 사업자는 1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의 연장을 할 때 가맹 본부가 요구하는 과도한 요구 사항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의 대항 요건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되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사업의 안정기에 도래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장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를 위한 현실적인 법률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표 6〉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 계약 만기 후 계약 연장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물음에 39.6%가 가맹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을 하였고 계약서의 수정사항으로 요구하겠다는 경우는 34.0%, 그냥 계약하겠다는 경우는 9.4%로 나타나, 가

〈표 6〉 가맹 본부가 가맹점의 계약 만기 후 계약 연장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구분	빈도(명)	백분율(%)
처음부터 해당 가맹점 가맹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21	39.6
가맹 계약 연장을 보장하도록 계약서의 내용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18	34.0
일단은 계약하고, 영업 수익률 등을 올려서 가맹계약연장을 보장하도록 가맹 본부에게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	9	17.0
다른 가맹 본부도 비슷한 조건이므로 계약할 것이다.	5	9.4
합계	53	100.0

맹 계약 기간의 연장 보장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약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상권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어서 계약 기간 동안 영업권의 보장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표준 약관 제3조에 의해 영업권의 보장이 명기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인지 정도와 계약시 어떠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으며 법률 분쟁시 그 해결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7〉은 상권보호와 관련된 법률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로, 가맹점 사업자의 43.4%만이 상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56.6%의 가맹점 사업자는 법률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맹 본부에서 가맹 계약 시 계약서상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모른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불공정 계약관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계약서의 권리 검토에 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홍보 또한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8〉은 계약시 가맹 본부로부터 일정한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 인정에 대한 여부와 그 유형에 관한 설문 결과, 계약서상에 기재되었던 경우 43.4%와 계약서에 없어 요구하여 기재한 경우 3.8%를 합한 가맹점 사업자의 47.2%만이 계약서상에 독점

〈표 7〉 상권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사전 인지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상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알고 있다.	23	43.4
상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모르고 있다.	30	56.6
합계	53	100.0

〈표 8〉 일정한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인정 및 유형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계약서상에 기재	23	43.4
계약서에 없어 요구하여 기재함.	2	3.8
영업권 내 새로운 체인점의 개설시 협의하기로 서면 계약	5	9.4
영업권 내 새로운 체인점의 개설시 협의하기로 구두 약속	4	7.5
요구를 하였지만 받아내지 못함	5	9.4
요구하지 않음	12	22.6
기타	2	3.8
합계	53	100.0

적 영업권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업권 인정의 다른 유형인 새로운 영업점 개설시 협의 여부를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하는 불공정 사례가 16.9%, 요구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9.4%와 요구하지 않은 경우 22.6%를 포함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48.9%는 법률적으로 영업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합법적인 영업권 인정에 있어서 가맹 본부는 이 조항을 누락 또는 거절, 서면 또는 구두 약속의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맹 본부의 무분별한 영업권의 난발로 인한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 저하와 가맹점 수를 늘리고 책임 없이 도산하는 가맹 본부를 근절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약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는 현재의 독점적 영업권에 대한 만족으로 이에 응답한 가맹점 사업자 30명 중 53.4%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독점적 영업권의 인정과 더불어 영업권 설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은 가맹점 영업권과 관련된 피해 유형으로, 가맹점 계약 체결 시 영업권 내 동일 가맹점의 개설에 대한 승낙 각서를 쓴 가맹점 사업자는 11.3%, 일방적으로 동일 가맹점이 개설된 경험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는 32.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프랜차이즈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불평등 계약 조항이며 법률적으로도 피해

〈표 9〉 현재의 독점적 영업권에 대한 만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현재의 독점적 영업권에 만족한다.	14	46.6
현재의 독점적 영업권에 만족하지 않는다.	16	53.4
합계	30	100.0

〈표 10〉 영업권과 관련한 피해 유형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가맹점 계약 체결시 영업권 내에 동일 가맹점을 개설 승낙의 각서를 쓴 경험	있다	6 11.3
	없다	47 88.7
영업권 내에서 동일 가맹점의 개설을 일방적으로 당해 본 경험	있다	17 32.1
	없다	36 67.9

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가맹점 개설의 피해를 입은 32.1%의 가맹점 사업자 모두 법률 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동안 가맹 본부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가맹 본부 위주의 계약 관행을 바로 잡을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5.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법률관계 규율의 차이 분석

〈표 11〉는 현재의 법령이 가맹점 사업자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며, 분석 결과 성별, 연령, 최종 학력에 따라 현재의 법령이 가맹점 사업자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표 12〉는 가맹점 개점 유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법률 관계 규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맹점 개점 유형 중 본사의 지원($p>.05$), 가맹점 사업자의 투자 비율($p>.05$), 순수 자기 자본의 비율($p>.05$)에 대하여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표 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법률관계 규율의 차이분석

구분	<i>N</i>	Mean	SD	<i>t/F</i>	<i>p</i>	
성별	남	43	2.6512	.9731	-.431	.668
	여	10	2.8000	1.0328		
연령	30대 이하	29	2.8621	.9151	1.214	.306
	40대	13	2.3846	.9608		
	50대	11	2.5455	1.1282		
최종 학력	고졸	12	3.0000	1.0445	2.963	.061
	전문대졸	14	3.0000	.9608		
	대학교졸 이상	27	2.3704	.8835		

〈표 12〉 가맹점 개점 유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법률관계 규율의 차이분석

가맹점 개점 유형	N	Mean	SD	t/F	p	
업종	패스트푸드	13	1.7692	.5991	5.483	.002**
	한식	10	2.7000	1.0593		
	치킨	10	3.2000	.7888		
	아이스크림	10	3.0000	.6667		
	주점	10	3.0000	1.0541		
본사와 거래기간	2년 이하	16	2.9375	.9287	2.855	.047*
	3~4년	15	2.9333	.9612		
	5~6년	8	1.8750	.6409		
	7년 이상	14	2.5714	1.0163		
가맹점 매출액 (만원/월)	2,000 미만	16	3.1250	.8851	3.958	.025*
	2,000~4,000미만	24	2.6667	1.0072		
	4,000이상	13	2.1538	.8006		
개점시 총비용 (만원)	6,000 미만	17	3.1176	.9275	4.980	.002**
	6,000~10,000 미만	8	2.3750	1.1877		
	12,000~20,000 미만	14	3.0000	.7845		
	20,000~40,000 미만	8	2.3750	.5175		
점포 실평수	40,000 이상	6	1.5000	.5477	6.349	.003**
	20평 미만	28	3.0714	.8576		
	20평 이상 50평 미만	11	2.4545	1.0357		
점포 좌석수	50평 이상	14	2.0714	.8287	7.141	.000***
	20석 미만	27	3.1852	.8338		
	20석 이상 40석 미만	10	2.4000	.9661		
	40석 이상 80석 미만	8	2.0000	.9258		
점포 직원수	80석 이상	8	2.0000	.5345	5.208	.003**
	2명 이하	11	3.3636	.6742		
	3~5명	19	2.8947	.9941		
	6~10명	8	2.2500	.8864		
본사의 지원	11명 이상	15	2.1333	.8338	1.174	.284
	설비와 자금 지원	9	3.0000	.8660		
가맹점 사업자의 투자비율	지원 없음	44	2.6136	.9934	3.164	.081
	100% 투자	45	2.7778	.9266		
투자금액 중 순수자기자본 비율	70% 이하	8	2.1250	1.1260	2.212	.069
	20% 이하	8	2.7500	.8864		
	30~50%	12	2.4167	.7930		
	60~70%	11	3.0000	1.2472		
	80~90%	9	2.0000	.8660		
100%	13	3.1538	.8006			

* $p < .05$, ** $p < .01$, *** $p < .001$.

업종($p<.01$), 본사와의 거래기간($p<.05$), 매출액($p<.05$), 개점 비용($p<.01$), 점포 실패수($p<.01$), 좌석수($p<.001$), 직원수($p<.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법률이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법률 관계를 가장 많이 규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맹점 사업자 유형은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고 본사와의 운영기간이 2년 이하이고 매출액은 월 2천만원 이하, 개점 비용은 6천만원 이하, 20평 이하의 점포에서 20석 이하의 좌석수를 갖고 직원수가 2명 이하인 가맹점 사업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이 가맹점 사업자의 법률 관계를 가장 많이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맹점 사업자 유형은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본사와의 거래기간이 5~6년, 월 매출액이 4천만원 이상, 개점 비용 4억 이상, 20~50평 점포, 40석이상의 좌석수, 직원수가 6~10명인 가맹점 사업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가맹점 사업자일수록 현재의 법률이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법률 관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5개 업종 외식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시 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평등 조항과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맹점 특성에 따른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법률 관계 규율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과 법률의 정비 및 개정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5개 업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분석 결과, 주로 대학교 졸업의 30대 남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내 5개 외식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점 유형 분석 결과, 5개 업종 모두 고른 분포를 하였으며, 가맹점 운영 기간은 3~4년, 가맹점 개점 비용은 1~2억, 점포 평수는 10~20평, 좌석수는 20석 미만, 직원(아르바이트 포함)은 3~5명, 월 매출액은 2,000~4,000만원, 본사의 지원 없이 투자금의 70~100%를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고 개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맹 계약과 관련된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 가맹 관련 법률의 홍보, 신규 계약체결 전 가맹 계약서의 사전 교부에 관한 법률 제정,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적 보장,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계약서의 권리 검토에 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맹점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홍보가 또한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상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 대부분의 가맹점 사업자가 독점

적 영업권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독점적 영업권의 인정과 영업권 설정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가맹점 개점 유형에 따른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법률 관계의 규율 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가맹점 사업자일수록 현재의 법률이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법률 관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 5개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업종을 경영하는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경실련 (1995) : 프랜차이즈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실련 공청회: 2.
3. 구재균 (1999) :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37-39
4. 김형배 (1997) :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806
5. 남진선 (2002) : 외식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계속되어야 한다. 호텔&레스토랑(5): 66-71
6. 박재호 (2002) : 외식 프랜차이즈의 생존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경영학회지 5(3)
7. 법무부 (1989) : 프랜차이즈의 법리. 법무자료 제115집 10
8. 양승두 (1984) : 공업소유권, 법경출판사: 86-91.
9. 양재헌 (2000) :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0. 유경숙 (2001) :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연구. 경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용택 (2002) :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비교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정동주 (1991) :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기삼)- 기업법의 행방. 전영사, 297
13. 천승태 (1996) : 가맹상 계약에 대한 법률문제 연구 : 당사자의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4. 최영홍 (1990) : 가맹상 계약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미국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42-45
15. 한국 산업훈련연구소 (1992) : 외식 비즈니스, 47
16. 한국법제연구원 (1994) : 프랜차이즈 관행에 관한 연구, 305
17. 허경화 (1993) :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정착화에 관한 연구: 패스트푸드를

중심으로. 경희대석사학위논문

18. Ghosh A · Crang CS (1990) : Minimaizing spatial conflict in franchise distribution systems. AMA Education Proceedings, AMA.
19. Mendelsohn (1985) : The guide to Franching. pergamon press 5.
20. 법무부(1989) : 프랜차이즈의 법리, 법무자료 제115집, p.10.

2006년 7월 10일 접수

2006년 12월 15일 게재확정